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 1 조 (목적)

본 규칙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중 내과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각 항과 같다.

1. "전임의"란 수련병원에서 내과분과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내과전문의를 말한다.
2. "수련병원"이란 대한내과학회의 지정을 받아 전임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도자"란 전임의 수련병원에서 해당 분과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내과분과전문의를 말한다.

제 3 조 (수련)

내과전문의로서 내과분과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한내과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본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수련기간)

1. 수련기간은 내과전문의 자격취득 후 1년으로 한다.
2. 수련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3. 수련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과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련)에 따른다.

제 5 조 (전임의 정원)

수련병원에서 수련시킬 수 있는 전임의 정원은 별표 3(전임의 정원기준)에 따른다.

제 6 조 (수련목표 및 내용)

1. 수련목표
 내과분과영역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내과분과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타과의 자문과 의료관계 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내과분과전문의를 양성함을 목표로 한다.
2. 수련내용은 별표 4(수련내용)와 같다.

제 7 조 (수련병원장의 권한)

1. 수련병원장은 제5조(전임의 정원)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전임의를 임명하고, 전임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
2. 수련병원장은 전임의가 수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련병원의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 8 조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 임용보고)

1.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교육지도자 및 전임의의 임용 및 수련 상황을 각 분과별로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군의관이나 전공의 추가수련 등으로 수련개시일이 지연된 전임의는 5월 말까지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당해 연도 분과전임의 명부)
2) 별지 제3호 (전년도 수련이수자 명부)
3) 별지 제4호 (당해 연도 교육지도자 명부)
4) 별지 제14호 (전임의 수련확인서)

2.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및 수련 상황을 보고 한 후 보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해당 분과 전임의 정원 배정 시 패널티(차기연도 전임의 정원 50% 삭감)를 부여한다.

제 9 조 (겸직 금지)

1. 전임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
2. 병역의무 중인 자는 내과분과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없다.

제 10 조 (수련병원의 지정)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내과책임자는 대한내과학회로 기간 내 별지 제5호 (내과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분과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 (내과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1.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내과전공의 수련병원으로서 교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며 충분한 환자와 적절한 시설 및 기타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5 (수련병원 지정기준)와 같다.

제 12 조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대한내과학회는 수련병원의 내과책임자에게 전임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수련 상황들을 감독할 수 있다.

제 13 조 (수련병원의 심사)

분과위원회는 분과관리이사의 명을 받아 매 3년 동안 1회 이상 지정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및 수련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7호 (내과분과전문의 수련병원 실태보고서)에 의하여 분과관리이사에게 보고하며, 이사장은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수련병원 지정의 취소)

이사장은 수련병원이 아래 각 항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미달될 때
2. 전임의의 임용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때
3. 수련병원의 심사 후 이사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
4. 기간 내 수련병원 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때

제 15 조 (운영세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6 조 (부칙)

1. 본 규칙은 199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칙 이전에 실시된 수련은 본 규칙에 의해 인정하지 않는다.
3. 본 규칙은 1998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칙은 2008년 2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칙은 2011년 3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칙은 2020년 9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본 규칙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본 규칙은 2021년 9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본 규칙은 2022년 9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